

취업비자 또는 취업이민을 신청할 때 신청자의 학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H-1B 취업비자의 경우 이민 법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 매년 학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65,000개의 H-1B 비자가 할당되어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고학력자들을 위해서 20,000개의 H-1B 비자가 별도로 할당되어있다.

하지만 오랜 경력이 있으면 학사학위가 없어도 H-1B 취업 비자를 받을 수는 있다. 이민국에서는 3년 경력을 1년 동안 대학공부를 한 것과 동등하게 본다. 그래서 신청자가



이동찬

이민 변호사

한 학위를 수여한다. 그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수여받았다면 그 학위를 미국에 있는 학사학위와 동등한 것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서 받아 취업이민 2순위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학교 전공과 전문직이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경력 또는 학습으로 한국에서 학위를 받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학교전공이 경력과는 다른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사무실에서는 학사학위와 5년 경력을 사용했을 때 학사학위의 전공이 다르고 케이스가 거절된 적이 없다.

그리고 취업이민을 진행할 때 신청자의 학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용주의 요구사항이다. 보통 고용주가 고학력을 요구할 때만 취업이민 2순위가 가능하다. 예를 들

학력과 비자 신청

학사학위가 없더라도 12년 경력이 있다면 그 것을 4년치의 학사학위와 동등한 것으로 평가받고 H-1B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2년 과정의 전문대학위와 6년 동안의 전문직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학력과 경력을 학사학위와 동등하다고 평가를 받고 H-1B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전문직과 학사학위의 전공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또한 신청자의 경력을 사용할 수 있다. H-1B 신청자가 전문분야에서 6년 경력 만 있으면 학사학위 전공을 전문분야와 맞는 전공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경력뿐만 아니라 학원에서 공부를 한 것도 학사학위를 받거나 학사학위의 전공을 바꾸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한국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있다. 그 기관에서 학점은행제를 사용하여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와 동등

학력은 취업이민을 할 때에도 중요하다. 취업이민은 여러 순위로 나누어져 있다. 취업이민 3순위에는 비숙련공, 숙련공, 전문직 카테고리가 있는데 비숙련공 카테고리는 신청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문호가 빨리 닫히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 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한다. 반면 숙련공과 전문직 카테고리는 비숙련공 카테고리보다 이민수속이 좀 더 빠르다. 그러나 숙련공으로 취업이민을 하려면 신청자는 2년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대를 졸업했어야 하고 전문직은 학사학위가 있어야 한다.

취업이민 3순위 보다 빠른 것은 취업이민 2순위이다. 그런데 취업이민 2순위는 고학력을 요구한다. 이민법에서 말하는 고학력은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와 5년 경력이다.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와 5년 경력이 있으면 1년 내에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가끔 학위를 정부에서 인가 받지 못한 학교 또는 학원에

가면 신청자가 학사학위와 5년 경력 이상이 있더라도 고용주가 학사학위와 2년 경력을 요구하면 취업이민 2순위는 진행할 수 없다.

고용주의 요구사항이 복잡한 경우도 많이 있다. 고용주가 석사학위를 요구할 수도 있고 석사학위가 없다면 학사학위와 5년 경력을 대체로 요구할 수도 있다. 가끔 이민국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노동부에서 그 요구사항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다. 노동부에서는 이민국과 달리 1년 동안의 대학공부를 1년 동안의 경력과 동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학사학위와 5년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2년 과정의 석사학위를 요구하는 것과 동등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항상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노동부에서 언젠가 문제 삼아 케이스를 거절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민법과 학력은 연관이 많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기를 바란다.